

2022년 전면개정판 객관식테마 형사소송법 정오표(1쇄기준)

[1권]

p.81 시정조치요구와 사건송치요구 ②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(동조 제2항 : 신설).

⇒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(7일이내: 수사준칙 제45조 제2항)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(동조 제2항 : 신설).

p.8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불송치 ③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)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21.순경 1차 다만,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중지 결정(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)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(수사준칙 제53조 제1항)⇒

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(수사준칙 제53조 제1항). 단,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중지와 검사의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(동준칙 제53조 제1항 단서).

[3권]

p.10. 12줄,

“▶불기소결정서⇒공개의 대상(대판2012.5.24.2012도1284)”를 삭제.

p.71. 문2. 해설①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, ④를 추가한다.

①제174조(출제당시에 의하면 타당한 내용이나, 현행법에 의하면 ‘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’로 개정되었다)

④제286조, 송달은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행위이나,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이 처리한다(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).

p.71. 정답표기를 아래와 같이 수정

1② 2④⇒ 2② 3④

p.260. 해설④와 정답을 수정

해설④乙에 대한 B조서, 즉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 종전에는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었으나(제312조 제2항),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.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 출제당시 법에 의하면 ④는 틀린내용이다.

[4권]

p.123.

문1 해설③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

③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(대판 2020. 10.22, 2020도4140 전원합의체).

p.128.

문8 해설㉠ 3줄 ~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ㄹ ~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2

p.132

문 14 해설 ㉠ ○: 대판 2006.4.14, 2006도734 ⇨

㉠ ×: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(대판 2020. 10.22, 2020도4140 전원합의체).

정답㉠⇨㉢